

이경순 DICA 플라자 이용지침

- 제정 : 1998년 6월 1일
- 개정 : 2015년 2월 28일
- 개정 : 2019년 8월 24일
- 관리부서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경순 DICA 플라자에서 소장하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멀티미디어 자료라 함은 통신매체로 얻어지는 정보와 음성·문자·그림·동영상 등이 혼합된 다양한 매체를 말하며, 이경순 DICA 플라자 시설은 PC, 복사기, 스캐너, 그룹스터디 룸, 홍은원 영상자료관, 기타 장인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이용자격) 도서관 규정 제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한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제4조 (이용시간 및 용도) ① 열람시간은 자료 열람시간과 동일하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장비 및 시설의 수리 및 보수 시
 2. 기타 중앙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전에 지정된 시간으로 제한하며, 필요할 경우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연장할 수 있다.
- ③ 이경순 DICA 플라자의 자료 및 시설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가한다.
1.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의 이용
 2. 인터넷 및 PC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의 이용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 포함)
 3. 그룹스터디 룸의 이용
 4. 홍은원 영상자료관 영화 상영 및 다른 목적의 이용
 5. 기타 장애인 보조시설의 이용 등

제5조 (사용제한) 제4조 제②항, 제③항의 각호를 위반할 시에는 즉시 이용을 제한한다.

제6조 (실내 대출) 멀티미디어 자료의 실내대출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멀티미디어 자료는 이경순 DICA 플라자 내에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 ②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 시에 자료와 신분증을 교환한다.

제7조 (관외대출) 실내대출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외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멀티미디어 자료의 관외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강사 이상의 교수와 직원
 2. 기타 관장이 허락한 경우
- ② 멀티미디어 자료의 관외대출 기간 및 수량은 단행본과 같다.

제8조 (기한 전 반납 요구)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 중인 자료일지라도 기한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연체료 징수) 대출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 징수액수 및 방법은 단행본과 동일하다.

제10조 (체납자에 대한 조치) 연체자로서 연체 자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행본 연체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11조 (변상) 대출 및 이용 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

- ① 자료의 파손 및 손상 시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되, 최신판이 있을 때는 최신판으로 변상한다.
- ② 동일자료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중앙도서관 ‘분실자료 변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12조 (기타) 기타 제반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지침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